

##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타임폴리오워드타임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작성기준일 : 2025.02.20

3. 정정사유 :

- 자펀드 환매주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로 인한 관련 문구 반영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4. 효력발생일 : 2025.03.13

###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1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신탁업자가이 드라인 제 34 조제 2 항 반영보완 및 자본시장 법 개정사항	① 신탁업자는 ---요구해야 한다. <b>&lt;추가&gt;</b>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 른 요구를 <u>제 3 영업일</u>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신탁업자는 --요구해야 한다. <b>다만,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b>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 른 요구를 <b>3 영업일</b> 이내에 - 공시하여야 한 다.
제 23 조 (판매가격)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① 수익증권의 -- <u>제 3 영업일</u> 에-- 기준가 격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u>제 4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한다.	① 수익증권의 -- <b>3 영업일</b> 에-- 기준가격으 로 한다. ② 제 1 항의-- <b>4 영업일</b> 에 공고되는 기준가 격으로 한다.
제 25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자펀드 환매 주기 변경 관 련 문구삭제 및 환매수수 료 삭제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 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u>날을 기준으로</u> 아래 각 호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 만, 환매청구일이 --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 정한다.  1. 매월 1 일부터 매월 15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15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단, 매월 15 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 월 16 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 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매월 16 일부터 매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단, 매월 말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 일부터 익월 15 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 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 24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 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	① 수익증권의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 에 환매를 청구한 <u>날부터 14 영업일(자투자 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15 영업일)에</u>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 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 영업일에 포함 하여 산정한다. <b>&lt;삭제&gt;</b>

		<p>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1. 매월 1일부터 매월 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2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단, 매월 15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6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p> <p>2. 매월 16일부터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2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단, 매월 말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일부터 익월 15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 24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b>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0 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21 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b></p> <p><b>&lt;삭제&gt;</b></p>
제 26 조 (환매연기)	자펀드 환매 주기 변경 관련 문구삭제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p>⑦ 집합투자업자는 --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 이 일정한 날의 <b>제 18 영업일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 1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b></p>	<p>⑦ 집합투자업자는 --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 이 일정한 날의 <b>18 영업일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lt;삭제&gt; 19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b></p>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주소지 이전	집합투자업자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집합투자업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변경등록신청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주소지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19층 (우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16층 (우 07321)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p>나. 특수위험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간접 투자의 특성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제 1 영업일 경과 후에 ---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나. 특수위험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간접 투자의 특성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b>1 영업일</b> 경과 후에 --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환매수수료 문구 삭제	<p>나. 특수위험 환매수수료 관련 위험</p>	<p>나. 특수위험 <b>&lt;삭제&gt;</b></p>

		이 투자신탁의 특정 수익자 환매에 따라 피투자펀드를 매도할 경우에 피투자펀드에서 성과보수가 발생되어 이 투자신탁 전체의 가치 및 잔존수익자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 간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이익금이 아닌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환매 시 수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손실 발생 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문구 삭제	다. 기타 투자위험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노출 됩니다. <u>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u>	다. 기타 투자위험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 노출 됩니다. <b>&lt;삭제&gt;</b>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u>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u> (나) <u>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u>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u>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u> ② <u>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u>
	자펀드 환매주기 변경관련 문구 삭제	나. 환매 (1) <u>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u>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u>매월 1일부터 매월 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단, 매월 15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6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u>  ② <u>매월 16일부터 매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단, 매월 말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일부터 익월 15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u>	나. 환매 (1) <u>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자투자신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자투자신탁의 실질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u>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u>  ② <u>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1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u>
	환매수수료 문구 삭제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으로써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으로써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p>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타임폴리오 워드타임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은 빈번한 환매를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빈번하게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p> <p>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는 계속 투자중인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됩니다.</p> <p>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p> <p>① 6개월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2.00%</p> <p>② 6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p> <p>※ 판매회사는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목적식 저축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p>	<p>&lt;삭제&gt;</p>
	<p>자펀드 환매주기 변경관련 문구 삭제</p>	<p>(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① 수익자 -- 이 일정한 날의 제 18영업일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 1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① 수익자 -- 이 일정한 날의 <b>18영업일</b>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b>19영업일</b>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p>	<p>소득세법 제 57 조의 2 및 법인세법 제 57 조의 2 개정 사항 반영</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gt; 1 이면 1, 환급비율 &lt;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처리하고 있습니다.</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b>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b></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p>	<p>업데이트</p>	<p>-</p>	<p>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p>
<p>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p>	<p>업데이트</p>	<p>-</p>	<p>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p>
<p>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업데이트</p>	<p>-</p>	<p>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p>
<p>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p>	<p>업데이트</p>	<p>-</p>	<p>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p>
<p>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나. 주요업무</p>	<p>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제 2 항 반영보완</p>	<p>(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을 ---- 요구하여야 합니다. &lt;추가&gt;</p>	<p>(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을 ---- 요구하여야 합니다. <b>다만,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b></p>
<p>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p>	<p>환매수수료 문구 삭제</p>	<p>- 집합투자업자가 ----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가 ----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